

# 투자자문서비스계약

(이하 "고객")과 하나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는 다음과 같이 투자자문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회사가 [별지]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 등(이하 "투자자문대상자산")에 관하여 계약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포트폴리오 재설계를 추천하는 리밸런싱 등의 방식으로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고객은 회사가 [별지]에서 정한 투자자문수수료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 (이하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 (투자자문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투자자문대상자산에 대한 [별지 1.]에서 정한 내용의 투자자문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 제4조 (계약기간)

- ①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②고객이 최초 계약 시 만기 자동연장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 30일 전계약기간 만료일을 통지하며, '별도의 요청이 없으면 자동연장 됨'을 안내하며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1년 연장된다.
- ③고객이 최초 계약 시 만기 자동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5영업일 전 계약기간 만료일을 통지하며,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 만기일 다음날 자문계약이 자동 해지 됨'을 안내한다.
- ④회사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투자자문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경우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투자자문서비스를 받고 있는 고객에게 서비스 종료 예정일, 종료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 (투자자문 제공방법)

- ① 본 계약에 따른 투자자문서비스는 회사에 본인 명의의 계좌 (투자자의 직접 운용지시가 가능한 형태의 계좌를 포함)를 보유하고 회사가 정한 소정의 양식과 절차에 따라 투자자문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에게만 제공되며, 고객은 투자자문서비스 신청 시투자자문서비스를 받아 운용할 계좌(이하 "자문결합계좌")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투자자문서비스는 제1항에 따라 고객이 지정한 자문결합계좌에 [별지]에서 정한 최소가입금액 이상이 입금되면 개시된다.
- ③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목표수익률, 투자기간, 투자금액 등 제반 사항을 사전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고객의 투자성향을 파악하도록 한다.
- ④ 회사는 제3항에서 파악한 고객의 투자성향 등에 적합한 투자자문서비스를 사전에 안내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제공한다.

## 제6조 (투자자문수수료)

- ①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대가로 투자자문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투자자문수수료는 기본수수료(투자자문보수)가 있다.
- ② 기본수수료(투자자문보수)는 투자자문의 운용결과에 관계없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기본수수료율(기본보수율)을 적용하여 징수하며 산정방법, 징수시기·방법 등은 [별지 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7조 (투자자문수수료의 변경)

- ① 회사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투자자문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다.([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투자자문수수료를 면제하였으나 수취하기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투자자문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서 본계약을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되는 계약의 시행일 이전에 제공된 투자자문서비스에 대하여는 종전의 투자자문수수료 산정방식을 적용한다.

### 제8조 (투자자문담당자의 선정과 변경)

- ① 회사는 투자자문대상자산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문담당자를 선정한다.
-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문담당자의 제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투자자문담당자를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실을 고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제9조 (비밀유지의무)

① 고객은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의 투자자문서비스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회사는 본 계약에 따른 투자자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 정보 등을 본계약의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누석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법원이나 감독기관 및 기타 정부기관의 제공명령이 있거나 법령상 공개 또는 제공이 강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 (통지의무)

- ① 회사가 본 계약에 의하여 고객에게 행하는 통지는 고객이 회사에 등록한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이하 "연락처")에 대해 카카오톡, SMS/LMS, 전자우편 등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한다.
- ② 고객은 연락처 등 회사의 투자자문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생길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 ③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1조 (투자자문에 의한 투자결과의 귀속)

회사가 투자자문대상자산을 자문하고 그에 따라 고객이 투자한 결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 제12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절차)

회사는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와 고객 간, 특정 고객과 다른 고객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 제13조 (면책)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1.천재지변·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투자자문서비스의 지연 또는 불능
- 2.고객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제14조 (투자자문업자 금지행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법규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 2.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삼자의 금전·증권, 그 밖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 3.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 5. 투자자문에 응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등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등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삼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 6. 고객에게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 7. 고객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또는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 제15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① 고객은 계약기간 중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본 계약 전부의 해지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고객의 계약위반내용의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정도가 중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위 시정조치 요구 없이 즉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고객의 자문결합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개시되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투자자문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 2. 계약체결 후 고객의 계약금액 미입금 등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③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하는 경우, 별도의 중도해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 제16조 (계약의 수정 등)

- ① 회사는 이 계약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정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수정계약 적용여부신·구대비표 등)을 수정되는 계약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관련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계약이 수정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수정되는 계약의 시행일 전에 게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수정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시행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수정 전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수정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계약의 수정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수정되는 계약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수정되는 계약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계약서를 회사의 모바일어플리케이션 등에 게시하여 고객이 계약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7조 (자문결합계좌의 출금제한 등)

자문결합계좌 내 금융투자상품의 시장 처분 불가 또는 증권시장 등의 폐쇄·정지·휴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이 요청한 출금 및 출고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회사는 지체없이 고객에게 통지한다.

## 제18조 (청약의 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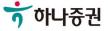
-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자문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연 9.9%)를 더하여 지급한다.

#### 제19조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제20조 (관련법규 등의 준용)

- ①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련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적용되는 회사의 약관 및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른다.
- ②이 계약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 제21조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22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년 \*\*월 \*\*일

[고객] [회사]

성 명 (인) 하나증권 주식회사

생년 월일 :

휴대전화번호 :

본 계약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별지 1.>

# 세부 계약조건

회사가 아래 사항에 대한 세부 조건을 사전에 고객에게 안내하고, 고객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본 계약의 조건으로 한다.

### 1. 계약금액 및 투자자문수수료

- ① 고객과 회사가 합의한 계약금액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자문결합계좌에 최초에 입금된 금원을 계약금액으로 간주함
  - 나. 최소가입금액은 일백만원(₩1,000,000)임. 최소가입금액 이상이 입금되기 전에는 투자자문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
  - 다. 자문결합계좌에 입금되는 통화는 반드시 대한민국 원화(KRW)여야 함
- ② 고객과 회사가 합의한 투자자문수수료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투자자문수수료는 후취 기본수수료를 징수함.
  - 나. 기본수수료
    - 1)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기본수수료는 후취로서 매 분기(3월, 6월. 9월, 12월)말의 익월(1월, 4월, 7월, 10월) 7영업일에 직전분기 보수를 고객의 자문결합계좌 또는 고객이 지정한 계좌의 예탁자산에서 자동징수하되, 위 징수일 이전에 중도해지 시 해지일에 자동 징수함
    - 2) 산정방식
      - 수취대상 기간의 평잔 x 기본 보수율 (0.5%) x 해당분기 계약유지일수/365
    - ※평잔이란 대상기간 동안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에 따라 고객이 운용한 자문결합 계좌내 자산의 일별 평가금액의 합을 대상기간 일수로 나눈 값임

### 2. 서비스별 투자자문대상자산

#### 가. KB증권 다이렉트인덱싱 서비스

계좌유형	자산유형
일반위탁	<ol> <li>국내상장 주식</li> <li>현금성 자산</li> </ol>



## 3. 서비스별 투자자문서비스의 내용

### 가. 하나증권 다이렉트인덱싱 서비스

- 고객이 '나만의 전략 만들기' 서비스를 통해서 구성한 전략 포트폴리오를 투자 전략으로 하는 포트폴리오 구성 및 분석에 관한 자문
- 고객이 지정한 전략 포트폴리오를 투자전략으로 하여 투자의 종류, 종목, 수량, 가격, 매매방법, 매매시기 등 종합적인 투자판단 등의 자문
- 고객이 지정한 전략 포트폴리오에 대한 운용현황 등 사후관리 목적의 정보제공
- 그 밖에 고객과 회사가 사전 합의한 상기 업무에 관련된 부수 업무